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안내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 자격확인 서류 안내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 용도 : 서류제출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두산건설(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상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22.09.19.~현재까지 / 전체출력
추가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24.09.19.~현재까지 / 전체출력)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근무 증명서류	본인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현재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건보주택 비치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포함) / 청약가점내용 확인서 / 위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19.(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